

입시공정관리위원회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시공정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무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과정상 인적 오류와 편견방지 대책의 수립 및 심의
2. 수험생이 제기한 이의제기나 불복에 관한 사항
3. 기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단, 입시전형위원회 위원은 입시공정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, 위원 중 2인은 학식과 덕망이 뛰어난 외부인사를 임명한다.

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활동) 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원칙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원서접수 개시일 2개월전부터 전문대학원 입시 종료 후 2개월까지로 한다.

② 전 항의 활동기간 외에도 수험생이 제기한 이의나 불복신청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위한 업무수행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6조(이의제기 및 불복에 대한 심사) 수험생으로부터의 이의제기는 입학전형 결과 발표 후 30일 이내에 접수된 것에 한해서만 심의한다. 수험생으로부터 입학전형 과정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불복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공정히 심사하여야 하며, 이의제기 접수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수험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활동비 지급)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